

전라남도 코로나19 주간소식 특집86호

43 주차

(2021.10.17.~10.23.)

발행일 2021.10.26.(화) 발행처 전라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소 전남도청 내 민원동 3층 전라남도감염병관리지원단 전화 061-286-6083 홈페이지 www.jcdm.or.kr

— 목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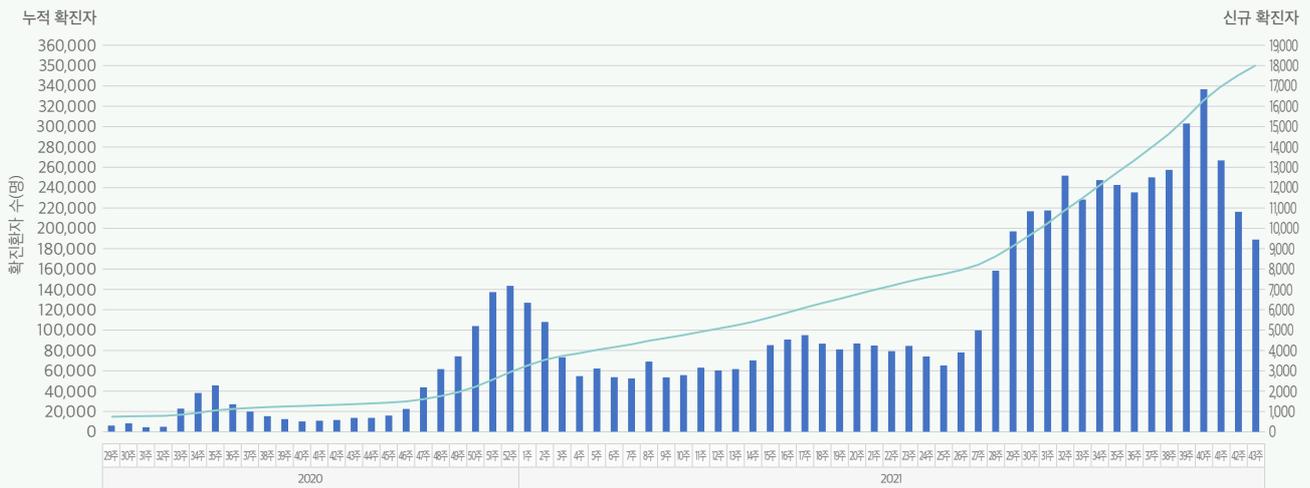
- I.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II. 코로나19 해외유입 현황
- III. 코로나 19 예방접종 현황
- IV. 코로나19 관련 주간 정책동향
- V. 주간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 VI. 홍보자료

I.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10월 24일 0시 기준)

확진환자 현황

- (전국) 확진환자 총 351,899명으로 43주차 신규 확진환자 9,503명 발생, 지난주 대비 완치자는 323,393명으로 13,049명 증가, 사망자는 2,766명으로 106명 증가(치명률 0.79%)
- (전남) 확진환자 총 3,459명으로 43주차 신규 확진환자 73명 발생, 75,053명의 접촉자 중 73,392명은 격리 해제되었으며 1,661명은 현재 격리 중, 사망자는 21명(치명률 0.61%)

■ 전국 (주별, 누적)



■ 전남 (주별,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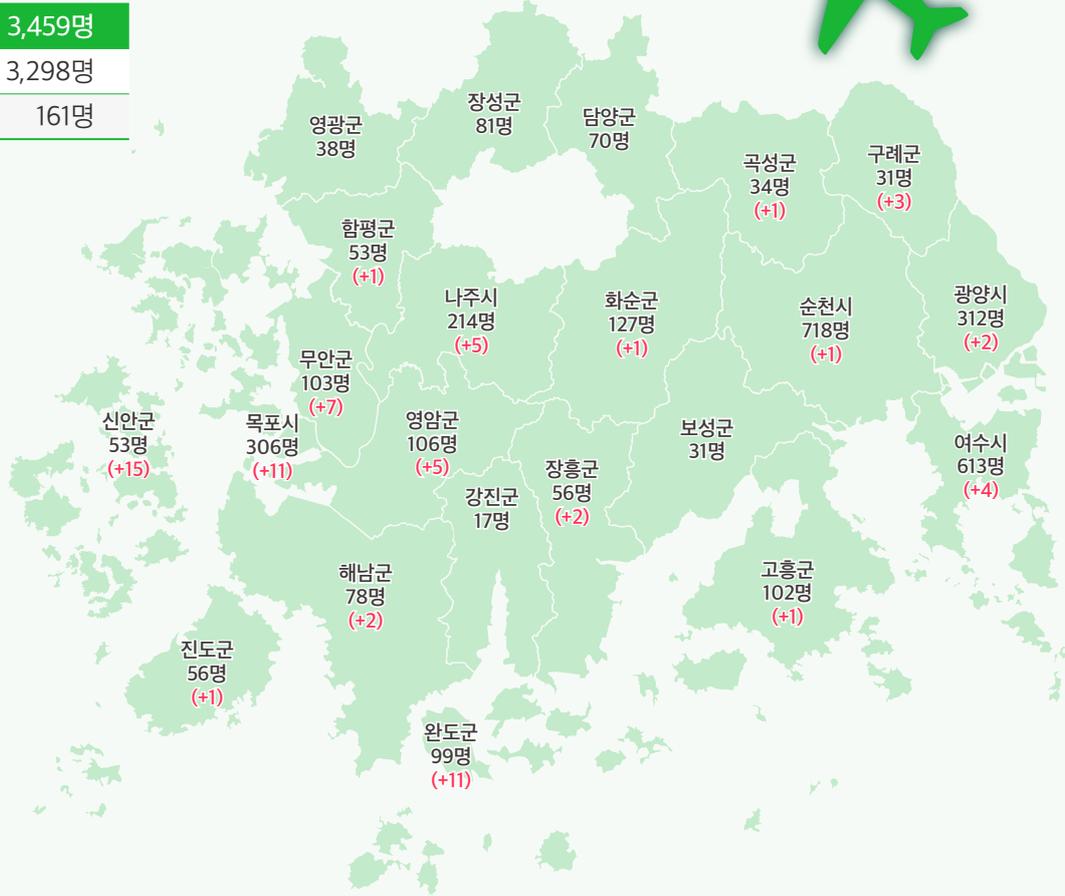
	29주	30주	31주	32주	33주	34주	35주	36주	37주	38주	39주	40주	41주	42주	43주	44주	45주	46주	47주	48주	49주	50주	51주	52주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16주	17주	18주	19주	20주	21주	22주	23주	24주	25주	26주	27주	28주	29주	30주	31주	32주	33주	34주	35주	36주	37주	38주	39주	40주	41주	42주	43주	
누적	35	36	38	42	42	81	142	159	166	167	169	173	176	177	181	188	194	238	353	420	444	479	499	543	589	607	659	710	749	766	774	828	859	881	903	905	912	917	969	1005	1039	1056	1159	1296	1389	1457	1516	1549	1582	1635	1664	1706	1797	1920	2044	2153	2302	2462	2532	2691	2831	2882	3003	3161	3253	3386	3459	
해외감염	2	1	2	3	0	1	1	4	3	1	2	3	1	1	3	1	1	2	2	1	1	2	0	3	3	2	0	1	0	2	2	1	1	0	1	1	1	1	4	1	3	2	1	0	4	2	0	0	0	0	7	3	6	2	2	10	9	6	7	5	7	3	2	1	0	1	0	0
지역감염	1	0	0	1	0	38	60	13	4	0	0	1	2	0	1	6	5	42	113	66	23	33	20	41	43	16	52	50	39	15	6	53	30	22	21	1	6	4	48	35	31	15	102	137	89	66	59	33	33	46	26	36	89	121	114	100	143	143	100	127	137	49	120	157	92	133	73	

· (전라남도 코로나19 확진자 시군별 현황, 2021.10.17.~ 10.23.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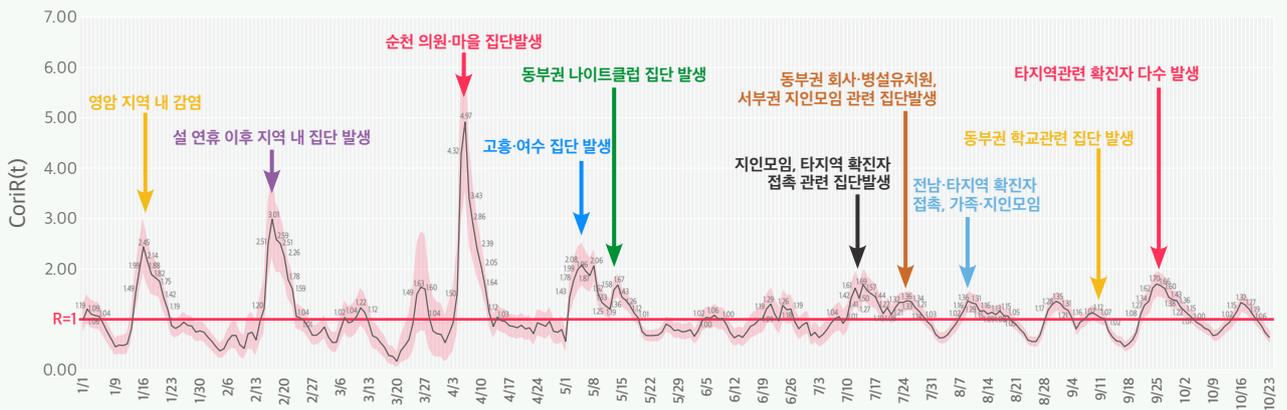


해외유입 161명

총 발생	3,459명
지역발생	3,298명
해외유입	161명



· (전라남도 코로나19 실시간 감염재생산수(Rt))



- 2021. 1. 1. ~ 2021. 10.23. 실시간 감염재생산수(Rt)

: 2021년 43주차에는 외국인 확진자(건설, 선원), 학교 관련 집단 발생이 있었으며 실시간 감염재생산수(Rt)가 10월 19일(Rt=1.06)까지 1 이상을 유지하다가 이후 1 이하로 감소추세를 보임

- 감염재생산수(Reproduction number, Ro)

: 한 사람의 감염자가 감염 가능 기간동안 직접 감염 시키는 평균 인원 수
(Ro<1: 감염병의 감소, Ro=1: 지역사회에 일정 수의 감염자가 유지, Ro>1: 감염병의 유행)

- 실시간 감염재생산수(Time-varying reproduction number, Rt)

: 실시간으로 질병 전파 양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검역·격리 및 방역 정책의 효과 추정 가능

감염경로

· (전국)

- 최근 2주간 감염경로(21.10.11.~21.10.24.),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참고

합계 (명(%))	선행확진자 접촉	지역집단 발생	병원 및 요양시설 등	조사중	해외유입	해외유입 관련
20,390 (100)	9,604 (47.1)	2,740 (13.4)	521 (2.6)	7,276 (35.7)	249 (1.2)	0 (0.0)

· (전남, 누적)

합계 (명/%)	해외 유입	집단사례								개별 사례	미분류 (조사중)
		직장 관련	마을 관련	다중이용 시설	의료 기관	감염취약 시설	군부대 관련	모임관련 (가족포함)	종교 관련		
3,459 (+73)	161	272 (+21)	116	783 (+18)	53	48	39	317	98	1,140 (+27)	432 (+7)
100	4.7	7.9	3.4	22.6	1.5	1.4	1.1	9.2	2.8	33.0	12.5

II. 코로나19 해외유입 현황 (10월 24일 0시 기준,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참고)

해외유입 환자현황

	구분	전주대비 신규(명)	누계(명)	비율(%)	
전국	합계	+140	14,960	100	
	유입국가	중국	-	150	1.0
		아시아(중국 외)	+79	8,447	56.4
		유럽	+24	2,036	13.6
		아메리카	+33	3,273	21.9
		아프리카	+2	1,016	6.8
		오세아니아	+2	38	0.3
	국적	내국인	+71	7,526	50.3
		외국인	+69	7,434	49.7
전남	합계	-	161	100.0	
	유입국가	중국	-	-	-
		아시아(중국 외)	-	90	55.9
		유럽	-	27	16.8
		아메리카	-	17	10.6
		중동	-	22	13.7
		아프리카	-	5	3.1
	국적	내국인	-	95	59.0
		외국인	-	66	41.0

III. 코로나 19 예방접종 현황 (10월 24일 0시 기준,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참고)

구분	전국		전남	
	누계(명)	인구 ¹⁾ 대비 접종률(%)	누계(명)	인구 ²⁾ 대비 접종률(%)
1차 접종자	40,764,241	79.4	1,507,126	81.9
접종완료자	35,975,412	70.1	1,363,551	73.7

1)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지) 기준

2) 전남 도민(184만 명) 기준

■ 코로나19 1차 접종 인구대비 접종률(전국, 전남)



■ 이상반응 신고현황

· (전국) 이상반응 신고현황: 336,870명*(접종자수 73,739,653명** 대비 0.45%)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5,690건, 화이자 157,104건, 얀센 8,511건, 모더나 65,565건

· (전남) 이상반응 신고현황: 11,820명*(접종자수 2,871,236명** 대비 0.41%)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756건, 화이자 4,372건, 얀센 284건, 모더나 3,408건

**1차 접종자 + 2차 접종자(완료자)

■ 전남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단위: (명, %)

등록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		
대상자(A)	1차(B)	접종률 (B/A*100)	완료(C)	접종률 (C/A*100)	1차	완료
59,733	51,328	85.9	35,624	59.6	23,184	19,649

전남 시군별 접종실적

단위: (명, %)

시군명	전남도 인구수(A) ¹⁾	접종 현황 ²⁾			
		1차(B)	접종률 (B/A*100)	완료(C)	접종률 (C/A*100)
계	1,839,432	1,507,126	81.9	1,363,551	73.7
목포시	222,392	171,628	77.2	150,657	67.7
여수시	278,605	224,222	80.5	198,546	71.3
순천시	280,931	220,114	78.4	197,730	70.4
나주시	114,856	94,961	82.7	83,978	73.1
광양시	151,174	117,819	77.9	105,415	69.7
담양군	45,911	39,578	86.2	36,788	80.1
곡성군	27,847	23,790	85.4	22,348	80.3
구례군	25,568	21,084	82.5	19,736	77.2
고흥군	63,534	54,994	86.6	51,951	81.8
보성군	40,076	34,350	85.7	32,347	80.7
화순군	62,085	52,247	84.2	47,993	77.3
장흥군	37,480	31,301	83.5	29,218	78.0
강진군	34,305	29,027	84.6	27,205	79.3
해남군	68,243	59,991	87.9	55,576	81.4
영암군	53,206	50,077	94.1	44,670	84.0
무안군	85,699	70,876	82.7	63,680	74.3
함평군	31,695	27,591	87.1	25,846	81.5
영광군	52,599	43,188	82.1	39,682	75.4
장성군	44,079	37,354	84.7	34,774	78.9
완도군	49,630	42,956	86.6	39,907	80.4
진도군	30,978	26,314	84.9	24,203	78.1
신안군	38,539	33,664	87.4	31,301	81.2

1) '21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말소자, 재외국민 제외)

2) 등록·미등록 외국인 포함

IV. 코로나19 관련 주간 정책동향

보건복지부

· 내달 1일부터 워드코로나, “생업시설 영업시간 해제”

-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각 단계는 총 6주 간격(4주간 시행, 2주간 평가)으로 추진
- (내용)
 - 접종완료율, 중환자실 입원병상 여력,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등으로 상황을 판단해 다음 개편 이행을 결정
 - 1차 개편(생업시설)은 11월 1일부터, 2차 개편(대규모 행사)은 12월 중순부터, 3차 개편(사적모임제한 해제)은 내년 1월 이후 예상

전라남도

· 전 국민 70%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 전남 74.1%, 광주 68.7%, 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목표
- (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첫 단계에서는 우선 식당 및 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 및 감염 확산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유지할 방침

· 전남도, 외국인 감염 차단 위한 취업자 검사 행정명령 강화

- 최근 전남지역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의 신규 취업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강화
- (내용)
 - 외국인 고용사업장 내 2주 1회 진단검사와 함께 신규 채용 또는 근무지 변경 시 진단검사 음성 결과를 확인 후 근무하도록 조치
 - 음성 결과 확인 전까지 이동 중지를 명령하고 미접종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안내

V. 주간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전라남도

- 수두 2건, A형간염 5건, 유행성이하선염 41건, CRE 10건, C형간염 17건, 레지오넬라증 1건, 쯤쯤가무시증 71건, 렘토스피라증 3건, 신증후군출혈열 2건 발생

국내 외

- (코로나-19) 전세계 발생 7주 연속 감소 및 델타변이 유행 지속
 - 188개국 등에서 총 240,239,218명(사망 4,892,690명) 발생
 - 지난 1주 간(2021.10.11.~10.17.) 신규 확진자 2,763,957명(-4%), 사망 46,140명(-2%) 발생
- (에볼라) DR콩고, ‘21.10.8. 첫 환자 발생 후 추가 환자 4명 발생
- (폴리오) 우크라이나, 백신유래 폴리오바이러스(cVDPV2) 감염 AFP 1명 발생
- (AI 인체감염증) 중국에서 A(H5N6)형 인체감염증 4명 발생

※ 바로가기▶ [주간 해외감염병 발생동향 42호](#)

전라남도 신고현황

구분	주간현황(2021)						누적신고현황 (43주)					지난해 신고현황		
	이번주	이전 4주				증감 ¹⁾	올해 2021	이전 3년			증감 ²⁾	2020년		
		43주	42주	41주	40주			39주	2020	2019		2018	전남	전국
1급	보툴리눔독소증	0	0	0	0	0	0	0	0	0	0	0	0	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0	0	0	0	0	0	0	0	0	0	0	0	0
2급	결핵	-	24	15	23	13	940	1,007	1,077	1,161	▼	1,049	19,933	
	수두	21	19	21	19	25	▼	929	1,082	2,317	2,534	▼	1,253	31,430
	홍역	0	0	0	0	0	0	1	11	1	▼	1	6	
	콜레라	0	0	0	0	0	0	0	0	0	0	0	-	
	장티푸스	0	0	0	1	0	▼	5	0	2	4	▲	0	39
	파라티푸스	0	0	0	0	0	0	2	5	0	3	▼	5	58
	세균성이질	0	0	0	0	0	0	5	2	6	5	▲	2	29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0	0	0	0	0	0	14	12	11	6	▲	12	270
	A형간염	5	6	0	2	0	▼	100	49	149	27	▲	66	3,989
	백일해	0	0	0	0	0	0	0	20	28	22	▼	21	123
	유행성이하선염	41	20	11	15	7	▲	415	336	529	634	▼	404	9,922
	풍진	0	0	0	0	0	0	0	0	1	0	▼	0	2
	수막구균감염증	0	0	0	0	0	0	0	0	0	0	0	0	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0	0	0	0	0	0	0	1	0	0	▼	1	1
	폐렴구균 감염증	0	0	0	0	0	0	5	10	10	16	▼	11	345
	한센병	0	0	0	0	0	0	0	1	0	0	▼	1	3
	성홍열	0	2	0	2	2	▼	42	94	201	553	▼	100	2,300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0	0	0	0	0	0	0	0	0	0	0	0	9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10	8	8	7	5	▲	320	296	292	120	▲	363	18,113
	E형간염	0	2	0	0	1	▼	20	2	0	0	▲	6	191
3급	파상풍	0	0	0	0	0	0	2	2	5	▼	2	30	
	B형간염	0	0	0	0	0	0	11	15	14	14	▼	17	382
	일본뇌염	0	0	0	0	0	0	0	0	2	1	▼	0	7
	C형간염	17	15	11	9	5	▲	584	732	573	757	▼	881	11,849
	말라리아	0	0	0	0	1	▼	3	1	0	6	▲	1	385
	레지오넬라증	1	1	0	1	0	0	27	12	13	5	▲	12	368
	비브리오패혈증	0	1	0	2	0	▼	8	10	6	4	▲	11	70
	발진열	0	1	0	0	0	▼	1	0	1	2	0	0	1
	쯔쯔가무시증	71	71	16	6	5	0	341	206	274	543	0	812	4,479
	렙토스피라증	3	4	1	0	0	▼	13	10	10	9	▲	13	114
	브루셀라증	0	0	0	0	0	0	1	2	0	0	▲	3	8
	신증후군출혈열	2	1	1	0	0	▲	26	26	50	42	▼	49	270
	크로이츠펠트-야콥병	0	0	0	0	0	0	3	1	2	0	▲	1	64
	덴기열	0	0	0	0	0	0	0	1	1	3	▼	1	43
	큐열	0	0	0	0	0	0	1	13	20	17	▼	13	69
	라임병	0	0	0	0	0	0	0	0	2	0	▼	0	18
	유비저	0	0	0	0	0	0	0	0	0	0	0	0	1
	치쿤구니야열	0	0	0	0	0	0	0	0	1	0	▼	0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0	0	0	0	0	0	8	8	16	16	▼	8	243
	지카바이러스감염증	0	0	0	0	0	0	0	0	1	0	▼	0	1

1) 이전 4주 신고건수 중 최대값 대비, 2) 이전 3년 평균 신고건수 대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감염병감시체계를 통하여 보고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기초로 집계됨
- 의료기관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함
- 지역별 통계는 환자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함 (단, VRSA 감염증과 CRE 감염증은 신고한 의료기관 주소지 기준임)
- 감염병 별 신고범위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포함 될 수 있음
- 43주(2021.10.17.~10.23.) 감염병 신고현황은 2021.10.26.(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에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 2021년 통계자료는 변동가능한 잠정통계임
- 최근 5년간 발생이 없었던 감염병은 제외함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폴리오, 발진티푸스, 공수병, 황열, 웨스트나일열, 진드기매개뇌염)
- 결핵은 42주(2021.10.10.~10.16.) 신환자 신고 현황을 수록한 질병관리본부 주간건강과질병 및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를 참고함

2021.10.21. 질병관리청

1 단계

대상자, 건강관리

코로나19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재택치료를 소개합니다!

재택치료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

1 / 9

2021.10.21. 질병관리청

그림으로 한눈에 보는 재택치료 체계

재택치료관리팀

- 건강 모니터링
- 진료 지원
- 격리 관리

집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

2 / 9

2021.10.21. 질병관리청

Q /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 ✓ 환자 상태: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 ✓ 환경 상태: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은 경우
- ✓ 환자·보호자의 동의

* 입원요인: 코로나19 중증 발생 이후 14일간 역사상, 호흡기연, 해열제로 주입되지 않는 38도 이상 발열, 악몽로 조절되지 않는 5도, 복식 환자, 항암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환자, 중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만성 환자, 고도비만(BMI>30), 중상을 동반한 임신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격리 취약한 주거환경: 폐쇄 공간, 에어컨, 에어컨, 노숙인 등

*** 의사소통능력: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격리관리 및 비대면 건강관리에 필요한 ICT기 활용, 개인 산소포화도 측정 및 입력 가능 여부로 판단

3 / 9

2021.10.21. 질병관리청

Q /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A 미성년,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와 70세 이상 확진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보호자 요건: 입원요인이 없고, 건강·격리관리 지원이 가능하며, ICT기 등 활용 능력 필요.

4 / 9

2021.10.21. 질병관리청

Q /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보호자가 아닌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만 허용하며, 보호자에 준하여 격리 및 관리합니다.

다만,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자기격리 대상이 된 동거인*은 생활공간을 분리해서 재택치료자와 함께 자기격리가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동거인:** 재택치료 시작 전 마지막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상태이어야 함

5 / 9

2021.10.21. 질병관리청

Q / 재택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치료기간은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유증상자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입니다.

6 / 9

2021.10.21. 질병관리청

Q / 집에서 어떤 관리를 받게 되나요?

A

- 재택치료 대상자는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받고,
-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 앱을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됩니다.

7 / 9

2021.10.21. 질병관리청

재택치료 시 제공되는 세부 지원 사항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	
○ 건강관리세트(확진자용)	○ 개인보호구세트(비확진자용)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손소독제	비닐장갑, KF마스크, 페이스선풐드, 긴팔가운, 세척용 소독제, 손소독제

응급 상황 발생 시

- 건강 모니터링 중 필요 시 24시간 전화 가능
- 응급 상황으로 판단 시 병원 이송 (지역에 따라 단기 진료센터에서 진료 받은 후 집으로 복귀)

8 / 9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

인·허가, 인사(채용승진 등), 계약, 보조금, 학사업무(입학, 성적 등), 병역 등 법에 명시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법령을 위반 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는 것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법

“부정청탁 관련 법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제 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제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 등이 아닌 사람
과태료
2천만 원 이하

공직자 등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